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

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6. 7. 06.

창 원 시 장

1. 영업시간의 제한

- 가. 야간 항해장비(레이더 등)설치 낚시어선 : 22:00 ~ 익일 03:00까지
- 나. 선외기 설치어선 또는 야간 항해장비(레이더 등)미설치 낚시어선
 - : 일몰 30분 후 ~ 일출 30분 전(기상청 발표기준)
 - ※ 단, 야간항해장비(레이더 등)를 설치한 3톤 이상의 낚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 시간을 적용한다.

2. 영업구역의 제한

- 가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국가기간산업 보호 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.
- 나. 해사안전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에 의한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.
- 다. 갯바위(간출암)영업 시는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이 대기 중(주변 50m 내)일 때 한하며.
 - 단, 사유지 도서는 도서 주인이 영업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엽업제한 구역으로 한다.
- 라. 3톤 미만의 선외기 설치어선 및 레이더 미설치 낚시어선은 창원시 선착장으로 부터 5마일을 벗어난 해역
- 마. 군사시설보호구역(통제보호구역)으로부터 300m이내 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.
- 바. 구산면 옥계리 해상관거 최종 방류구(N35°06′05″ E128°36′50″)의 반경 900m이내 해역

3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조치

가. 기상특보 발효 및 기상악화 시 : 출항금지

나. 안전운항 위험 상존 시 : 출항제한

4. 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

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및 면허어장 상에 잡종선(목재류, 합성수지류 등)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 상판에 낚시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5.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

가. 공통사항

- (1)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(승객 및 선원)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2) 폭발물,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
나. 승객 준수사항

- (1)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로 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하며,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어선업자가 대피 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.
- (2)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(3)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신고 어선일 경우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4)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가)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(나)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(다)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(라)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(마)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- (바)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무단 취사, 야생 동·식물을 반출 하는 등의 행위
- (5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(6)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·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준수하고 포획·채취 시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(7)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,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.

(8)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신원확인 및 정확한 승객명부 작성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
다. 낚시어선업자(선원) 준수사항

- (1) 낚시어선업자는 [별표1]에서 정한 『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』를 갖추어야 하며,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.
- (2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 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(기록)하여야 하며, 통신소통 불가능 장소에는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나) 출·입항 신고 시 낚시지점별 하선인원을 신고하여 승객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.
- (3)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·군·구의 관할구역에 안내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고시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4)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비 안전서,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(5)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,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 투기방지를 위한 쓰레기 봉투를 낚시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휴지통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
- (6) 낚시어선업자는 『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』을 [별표2]에 따라 낚시객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(7)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,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8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9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
- (10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
- (11)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(12) 민간대행신고소에 출입항 신고하는 낚시어선은 출입항시 낚시어선의 안전과 승객의 신원확보를 위해 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(출장소)에 승선자명부와 출 항사실을 통신기기(팩스, 전화, 스마트폰, 문자 등)로 전송하여야 한다.
- (13) 어선위치발신장치(V-PASS, AIS 등)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,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를 아니 하거나 고의로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단, 법 제33조1항의 출입항신고기관(이하 "출입항신고기관"이라한다)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부 칙

- 1. 이 고시는 2016.7.18.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고시 제2015-156호 『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』는 폐지한다.

[별표 1]

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

(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)

1. 구명설비

- (가)승선인원의 12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, 이중 20%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.
- (나) 최대승선인원의 3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
- (다) 지름 10mm 이상,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

2.소화 설비

- (가)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: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
- (나)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: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
- 3.전기 설비 :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 설비

4. 그 밖의 설비

- (가)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
- (나)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
- (다) 핸드레일
- (라) 비상용 구급약품 세트
- (마) 자기점화등 1개 이상
- 비고 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중 낚시어선업신고 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[별표 2]

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(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)

1. 게시판의 제작 기준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

나. 색상

○ 글씨 : 검은색

○ 바탕 : 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- 흰색

승객 준수사항은 - 노란색

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

○ 게시판의 부착 장소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. 아래의〈예시〉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
2. 게시 장소

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(게시 예시)

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

승객 준수사항

- ※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 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・군수 ・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.
 - 1.
 - 2.
 - •
 - .

승선정원 명

승객 준수사항

- 1. 낚시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 시 안전운행 등에 방해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어선업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2. 낚시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 휴대폰 등 연락처를 낚시어선업자에게 알려야 하며, 야영을 자제하여야 합니다.
- 3. 낚시승객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②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③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④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⑤ 미끼를 낚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
 - ⑥ 낚시제한기준(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,2)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
 - ⑦ 낚시어선 내 및 낚시장소에서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투기 하는 행위
- 4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대피 요청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